

의안번호	제 164 호
의결 연월일	2015. 4. . (제 339 회)

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·운영조례안

발의자	박봉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4월 13일

#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·운영 조례안 (박봉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4월 13일  
발 의 자 : 박봉순, 박한범, 박종규,  
임병운, 장선배, 최병윤,  
이종욱

## 1. 제정이유

충청북도의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해 지역 경제를 지속 발전 시킬 수 있는 중·장기 과제를 발굴, 선정, 기획, 자문하기 위한 “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” 을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미래과제의 발굴·선정·조사·자문을 위한 “충청북도 미래100년 준비 지원단” 설치 (안 제3조)
- 나. 지원단의 기능 (안 제4조)
  - 충북 미래과제 발굴, 선정, 사업기획, 조사, 용역수행, 자문 등
- 다. 지원단 구성 (안 제5조)
  - 단장: 미래전략기획단 업무 관장 부지사
  - 단원: 산학연관 전문가, 도내 소재 정부 기관단체 담당자 등(50명 이내)
  - 미래과제 기획화를 위한 과제별 태스크포스팀 구성·운영
- 라. 사업기획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단원, 외부전문가와의 수의계약 의뢰 (안 제10조)
- 마. 단원, 외부전문가, 태스크포스팀원에 대한 기획연구비, 자문료 등 필요 경비 지급 (안 제11조)

**3. 제정 조례안 : 붙임**

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(비용추계서) : 붙임

다. 협의 : 미래전략기획단과 협의

라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5-13호

##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·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설치·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미래과제”란 지역 경제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기획 과제를 말한다.
2. “외부전문가”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미래과제를 제안·기획·조사·자문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단 설치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미래과제의 발굴·선정·조사·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둔다.

**제4조(기능)**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충북 미래과제 발굴
2.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미래과제 선정·자문
3. 미래과제의 사업기획, 조사, 자문 및 용역수행
4. 그 밖에 미래과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

**제5조(구성)**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단원은

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도 미래발전과 관련 있는 산·학·연·관 전문가
  2. 미래과제 발굴·선정·기획·실행 전문가
  3. 도내 소재 정부 기관·단체(출자·출연기관을 포함한다) 관련 담당자
  4.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전문가 등
- ③ 단장은 필요시 미래과제의 기획화를 위해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임기 및 위촉해제)**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도지사는 단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**제7조(단장의 직무 등)**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 또는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태스크포스팀원에게 미래과제를 제안·기획·조사·자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)**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된다.

**제9조(회의 등)** ① 지원단 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는 단장이 필요한 때

에 소집한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및 태스크포스팀의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사업기획용역 등)** ① 단장은 사업기획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와의 용역 수의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사업기획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관계공무원은 단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① 지원단 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에 참석한 단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도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.

② 단원, 외부전문가 또는 태스크포스팀원이 미래과제를 제안·기획·조사·자문하는 경우에는 기획연구비,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운영규정)**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제9조(계약의 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(指名)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, 실적, 기술보유상황, 재무상태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.

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,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4.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
차.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
2.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
3.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
**4. 영 제25조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**

5.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.



##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·운영 조례(안)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 및 과제 선정 전문가 그룹 필요와 충북경제 4% 달성을 견인하고 충북미래 지속성장기반 네트워크 구축
  - 준비 지원단, 현안사업 태스크포스팀, 외부전문가 등 운영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준비 지원단 운영경비(출석·안전심사원거리출석수당, 기획연구비 등)
- 태스크포스팀 운영경비(출석·안전심사원거리출석수당, 기획연구비 등)
- 외부전문가 활용경비(제안기획·조사자문비 등)

### 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·운영 조례 제11조(수당 등)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준비 지원단 운영경비(30명) 및 분기 1회 개최
- 현안사업 태스크포스팀 운영경비(5명) 및 연 3회 개최
- 외부전문가 활용경비(20회)

#### 나. 추계 결과

- 준비 지원단 운영경비 : 72,000천원
- 현안사업 태스크포스팀 운영경비 : 18,000천원
- 외부전문가 활용경비 : 10,000천원

####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# 6. 작성자 : 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두 표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	5차년도 (2019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준비지원단 및 현안 태스크포스팀 운영	90,000	90,000	90,000	90,000	90,000	450,000
외부전문가 활용 기획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재원 조달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						
시·군비						
기 타 (민간 자부담)						